#### [서식 예] 반소장(퇴직금청구)



# 반 소 장

사 건 2000가소000 손해배상(기)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아래와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 퇴직금청구의 소

## 반소청구취지

-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20○○. ○○.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반 소 청 구 원 인

1. 피고(반소원고)는 ○○시 ○○구 ○○길 ○○-○에 소재한 원고(반소피고)회사에 20○○. ○. ○. 입사하여 20○○. ○○. □. 퇴사할 때까지 ○○점 매장 및 ◎ ◎점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였습니다.

- 2. 피고(반소원고)는 매월 금 ○○○원 정도의 월급과 400%의 수당을 원고(호 피고)회사로부터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받았습니다.
- 3. 그러나 피고(반소원고)가 20○○. ○○. ○. 퇴직할 당시 원고(반소피고)회사로부터 되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으며, 그 퇴직금은 금 ○○○원입니다. 또한, 단체협약서에 퇴직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금품청산제도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지급의무의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반소원고)는 퇴직금청구권을 퇴직한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4. 따라서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회사에게 위 퇴직금 ○○○원 및 이에 대한 퇴직한 날의 다음날인 20○○. ○○. ○○.부터 20○○. ○○. ○○.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반소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단체협약서

1. 을 제2호증 체불금품확인원

###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반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피고(반소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제○○민사단독 귀중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민사소
제출법원	본소 계속법원 제출기간 송법 제269조 제1항)
제출부수	반소장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인지액 : ○○○원(☞산정방법)※ 아래(1)참조
  비 용	단, 본소와 목적이 동일한 반소장에는 본소인지액을 공제한 액
미 · 공	의 인지를 붙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법 제4조 제2항)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및 기 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
	는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36조(현행 제37조) 소정의 금품청산제도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
	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
	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퇴직금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 따
	라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판결).
	·피고회사가 상인이라면 피고회사가 그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그의 영
	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보조적 상행위에 따른 임금 및 퇴
	직금지급채무는 상사채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지연손해금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음(대법원 1977. 4. 12. 선고76다497 판결, 1976.
	6. 22. 선고 76다28 판결).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는데(민사
	소송법 제271조), 이 규정은 원고가 반소의 제기를 유발한 본소는 스스로 취하
기 타	해놓고 그로 인하여 유발된 반소만의 유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공평
	치 못하다는 이유에서 원고가 본소를 취하한 때에는 피고도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본소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적
	법하다 하여 각하됨으로써 종료된 경우에까지 유추적용 할 수 없고, 원고의 동
	의가 있어야만 반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298 판결).
	·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됨(민사소송법 제412조).
	·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나, 반소청구
	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
	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
	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허용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
	6708 판결).



#### ※ (1)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 소장의 보정, 반소